
입 법 정 보

2017-7호

섬기는 일하는 가까운
강원도의회

의 회 사 무 처
(수석전문위원실)



목 차



1.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5
2.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5
3.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5
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6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6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7
7.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7
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8
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8
10.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무부)	9
1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토교통부)	9
1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	10
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10
1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
1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11
1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12
1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13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17
1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18
2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18
2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19
2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19

2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20
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
2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0
26.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1
27.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21
28.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22
2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22
3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3
3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24
32.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25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26
34.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26
3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27
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28
3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0
3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0
39.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32
4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33
41.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일부개정령(안) (국방부)	33
4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34
4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34
4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5
45.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5
4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36
47.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환경부)	36
48.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환경부)	36
4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7

5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38
5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38
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9
5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39
5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0
55.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41
5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여성가족부)	42
5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42
58.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43
59.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문화체육관광부)	44
6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노동부)	44

1.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3. 20. • 마감일자 : 2017. 3. 23.
- 공무원보수규정 (대통령령 제27769호, 2017. 1. 6. 공포·시행)의 개정으로 공무원 봉급 등이 인상·조정(총 보수 대비 3.5% 인상)되어 이를 검사의 보수 지급에 반영하려는 것임
- 검찰총장 및 검사의 보수에 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른 인상분 반영(안 제7조 별표2)

2.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3. 20. • 마감일자 : 2017. 5. 1.
- 가. 군 복무중 사망자에 대한 중앙전공사상심사 후 재심사 제한 및 입대전 발병한 정신질환에 대한 적용근거가 미반영되어 유가족 및 타국가기관(권익위, 인권위 등)으로부터 지속적인 개정을 요구 받고 있음.
- 나. 이에 따라 군 복무 중 사망자에 대해서 최대한의 예우 및 유족과 당사자의 적극적인 권리구제 측면에서 중앙전공사상심사 후 1회에 한하여 재심사 기회 제공 및 입대전 발병한 정신질환에 대한 심사근거를 시행령 개정 검토하였으며
- 다. 양성평등기본법 준수 및 법과 시행령상의 심사위원 구성인원 통일로 해석상의 오류 방지를 위해 개정하려는 것임

3. 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가보훈처)

- 예고일자 : 2017. 3. 20. • 마감일자 : 2017. 5. 1.
- 지방보훈관서가 신설되는 내용으로 「국가보훈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890호, 2017. 2. 28. 공포·시행)됨에 따라 현충시설 관리번호 부여기준(별표)에 있는 서울지방보훈청 관할구역 및 대전지방보훈청 관할구역을 개정하려는 것임

4.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3. 21. • 마감일자 : 2017. 5. 1.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내 읍 면 동에서도 신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입증서류를 추가,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광범위하게 통용됨에도 법률 위임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 이 외에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주민등록번호 변경방법(안 제2조제1항)
변경되는 주민등록번호는 기존의 주민등록번호와 구별되도록 지역번호 등이 다른 주민등록번호로 변경하는 방법을 규정함
- 나.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 근거 명확화(안 제14조)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법 제29조)사무의 일부에 해당하나 명확한 법률의 위임근거가 규정되지 않아 법 제29조에 근거해 주민등록전입세대의 열람이 가능함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다. 가정폭력피해사실 입증서류 추가(안 제13조의2)
일시지원복지시설은 배우자 학대로 아동양육 및 모(母)의 건강에 지장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일시적 또는 일정기간동안 모와 아동에게 주거·생계를 지원하는 시설로, 해당시설의 입소자들은 가정폭력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시지원복지시설이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과 구분되어 주민등록표 열람 및 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없어 입증서류에 일시지원복지시설의 입소확인서를 추가하고자 함

5.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3. 21. • 마감일자 : 2017. 5. 1.

-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할 때 읍 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서도 재발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신청인의 편의 제고,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하는 경우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에서 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내 읍 면 동에서도 신규 발급할 수 있도록 하고, 가정폭력피해자가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 제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하는 입증서류를 추가, 주민등록전입 세대의 열람이 광범위하게 통용됨에도 법률 위임근거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 이 외에도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른 시행령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함
- 가.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근거 마련(안 제40조제2항)
인터넷을 통한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근거를 마련하고 신청접수절차 및 신청철회 기간 등에 대한 규정함
- 나.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기관 확대(별지 제29호 서식)
주민등록증 신규발급을 주민등록지 관할 읍 면 동이외에 주민등록지 관할 시 군 구 내 모든 읍 면 동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함

6.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3. 21. • 마감일자 : 2017. 5. 1.
- 현재 전문의 수련 중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겸직금지 의무, 부적합 판정받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금지 등 법률상 위임근거 없이 시행령 또는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개선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의 의료인단체 중앙회의 보수교육 감독권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기 위하여 의료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7. 한국수출입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기획재정부)

- 예고일자 : 2017. 3. 21. • 마감일자 : 2017. 5. 1.
-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특정 기업, 계열에 대한 과다여신이 발생하지 않도록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

하는 자(동일차주) 및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축소하려는 것임

- 가. 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 축소(안 제17조의5 제1항 및 제3항)

동일한 개인·법인이나 그와 같은 기업집단에 속하는 자(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80에서 100분의 50으로,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각각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수출입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서 100분의 40으로 각각 축소함

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21. • 마감일자 : 2017. 3. 28.

- 가. 자동차 충전시설 건축면적 완화(안 제119조제1항제2호가목 4) 신설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 유도 및 활성화를 위하여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과 그 시설과 함께 설치된 충전 전용 주차 구획 부분의 건축면적 산정을 완화함

9.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3. 22. • 마감일자 : 2017. 4. 6.

- 주요 국제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대상 국제행사가 일부 종료되거나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지원대상 국제행사의 변경 및 배분비율을 조정하고자 함
- 가. 수익금 지원대상 국제행사 삭제 및 추가(안 별표 2 제1호)
 - 1) 대회가 종료된 ‘2015경북문경세계군인체육대회’를 삭제하고, ‘2017피파20세월드컵대회’를 추가하는 한편, 대회의 공식명칭이 변경된 ‘2017무주WTF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및 ‘2018 평창 동계올림픽 및 동계패럴림픽대회’를 각각 반영
- 나. 수익금 배분 비율 및 방법 변경(안 별표 2 제3호)

1) 기간이 경과된 2015년 수익금의 배분 비율 및 방법을 삭제하고, 2019년까지의 국제행사 중 새롭게 추가 또는 명칭이 변경된 국제행사 반영 및 배분 비율을 조정

10. 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3. 22. • 마감일자 : 2017. 5. 1.
- 가사소송법은 1991. 1. 1. 제정 · 시행 된지 26년 이상 경과하여 전면적으로 체제를 정비할 시점이 도래하였고, 가사사건에 대한 국민인식과 사회상의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음

11.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22. • 마감일자 : 2017. 5. 1.
-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계획의 수립·집행 및 수자원 관리 효율화 업무를 체계적·통합적으로 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 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44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가. 수자원의 조사 등 (안 제3조부터 제15조까지)
 - 1) 홍수피해·가뭄 상황조사 항목을 규정하고 홍수위험지도·가뭄취약지도 제작시 고려사항을 규정함.
 - 2) 수문조사기본계획 수립시 포함사항을 정하고 수문조사의 중복방지를 위하여 자료의 공동 활용 및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함.
 - 3) 수문조사 전담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출연금을 받는 전담기관의 연간 자금집행계획서 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 나. 수자원계획의 수립 및 관리 등 (안 제16조부터 제23조까지)
 - 1) 수자원장기종합계획,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지역수자원관리계획과 특정하천유역치수계획 수립시 포함사항을 정함.
 - 2)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을 수립하는 하천유역의 범위를 공통유역도

에 따른 4대 대권역(한강권, 낙동강권, 금강권, 섬진·영산강권)으로 구분하고 대권역별로 각각 수립토록 함.

3) 수자원계획 수립시 필요절차인 공청회에 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
다.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안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1) 수자원 시설 재평가는 10년 주기로 하며, 다른 법령에 따른 수자원 시설 평가결과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2) 수자원 정보체계 구축시 포함사항을 규정하고 수자원분야 국제협력 업무범위를 추가함.

라. 수자원관리위원회 (안 제27조부터 제36조까지)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 분과위원회의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규정하고 지역수자원관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대하여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용토록 함.

마. 권한의 위임 등 (안 제37조부터 제41조까지)

국토교통부장관의 업무권한 중 일부를 관할 홍수통제소장 등에게 위임하고, 일부 업무는 수자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12.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22. ● 마감일자 : 2017. 5. 1.

- 수자원의 조사, 수자원 관리 효율화 등의 업무를 체계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수자원을 과학적으로 관리하고 홍수·가뭄 등 물 관련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민생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내용의 「수자원의 조사·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44호, 2017.1.17. 공포, 2017.7.18. 시행)됨에 따라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1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3. 23. ● 마감일자 : 2017. 5. 2.

- 개정 발명진흥법에서 시행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임

14.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3. 23. • 마감일자 : 2017. 5. 2.
- 범정부적인 인증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유사한 성격의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 제도를 통합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인증 신청절차 및 표시방법을 폐지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 신청절차 및 표시방법 폐지(안 제4조, 제7조, 별지 제3호서식 등 개정)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 및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가 통합됨에 따라 전통 목재제품 인증 신청 절차 및 표시방법을 폐지하고,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별지서식 제3호서식을 개정하고자 함
- 나.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서 제출서류 개선(안 제27조, 별지 제40호서식 등 개정)
목구조기술자 자격증 발급신청시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관련서류를 주민등록표 등본을 주민등록표 초본으로 간소화하고자 함

15.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3. 23. • 마감일자 : 2017. 5. 2.
- 기업체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목재제품 일부 품목에 대하여 사전 검사제도를 자기적합성 선언 제도로 전환하고, 수입 목재제품의 원활한 규격·품질 검사를 위하여 국외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목재제품 품질단속 권한을 지자체에 확대 운영하여 품질단속을 강화하고자 하며, 범정부적인 인증제도 정비계획에 따라 유

사한 성격의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를 통합 운영하는 등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2016.12.2.)에 따라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 가.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 통폐합(안 제4조)

목재제품 명인 인정제도와 전통 목재제품 인증제도가 별도로 운영되던 것을 목재제품 명인 인정 제도로 통폐합 운영하여 목재제품 명인으로 인정받은 자가 직접 생산한 목재제품에 대하여 표시 할 수 있도록 함

나. 국외 규격·품질 검사기관 지정 법적근거 마련(안 제19조)

수입 목재제품의 원활한 규격·품질 검사를 위하여 수출국 정부가 공인한 기관을 국외 규격·품질 검사기관의 지정근거 마련

다. 목재제품 품질단속 권한을 시·도 확대 운영(안 제32조)

목재제품 품질단속 권한을 산림청에서 시·도로 확대하여 품질단속을 강화하고자 함

16.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3. 23. • 마감일자 : 2017. 5. 4.

-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13호, 2016. 2. 3. 공포, 2017.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7.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3. 23.
- 마감일자 : 2017. 5. 4.

○ 연명의료에 대한 기본원칙, 연명의료결정의 관리 체계, 연명의료의 결정 및 그 이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을 제도화함으로써 환자의 자기결정을 존중하고 환자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하며, 암환자에만 국한되어 있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일정한 범위의 말기환자에게 확대 적용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근거 법령을 마련하여 국민 모두가 인간적인 품위를 지키며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호스피스·완화 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013호, 2016. 2. 3. 공포, 2017. 8.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말기환자의 진단 절차 및 기준(안 제2조, 별표 1)

호스피스 서비스 신청 및 연명의료 계획서 작성 시 담당의사에게 말기 진단을 요청하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의 전문의는 말기진단 후 말기진단 의사소견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 말기환자의 진단 절차 및 기준을 정함

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전 설명(안 제3조)

담당의사는 연명의료계획서 작성 전에 환자에게 상담기관인 의료기관 윤리위원회의 연락처·이용방법 등을 설명하도록 함

다. 연명의료계획서의 작성·등록·통보 등(안 제5조)

1) 연명의료계획서를 법정서식으로 마련하고 담당의사는 작성된 연명의료계획서를 말기환자진단서 또는 임종과정판단서를 첨부하여 소속의료기관에 등록·보관하도록 함

2) 의료기관의 장은 연명의료계획서가 의료기관에 등록된 경우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라.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지정 절차(안 제6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출서류 검토 및 현지 확인 후 등록기관 지정서 발급하도록 함

마.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의 업무(안 제7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상담자에 대한 연명의료결정 교육을 실시하고 상담·교육 등 업무수행에 따른 결과의 기록·보관하도록 함

바. 등록기관의 휴·폐업(안 제8조·제9조)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을 하고자하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폐업·휴업 신고서 및 기록·보관 중인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관리기관의 장의 지시에 따라 이관 또는 파기하도록 함

사.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 설명(안 제10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전에 작성자에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문의처·문의방법,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의 통보되어 향후 의료기관에서 조회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함

아.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작성·등록·통보 등(안 제12조)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법정서식으로 마련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작성되면 등록기관은 사전 연명의료의향서를 등록·보관하고 지체 없이 관리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자.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등록(안 제13조)

- 1)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 등록 신청을 하고, 보건복지부는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등록증 발급하도록 함
- 2) 다른 의료기관이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위탁을 의뢰한 경우 등록신청서와 협약서를 제출하면 등록한 것으로 갈음하도록 함

차. 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활동(안 제14조)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해당 의료기관에 등록된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대한 조사·감독, 의료기관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 및 그 이행에 대한 표준운영지침의 마련·배포·교육 등의 활동을 수행하도록 함

카. 의료기관윤리위원회 협약(안 제15조)

종합병원 이상은 다른 의료기관윤리위원회에 위탁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은 상급종합병원이면서 전담인력을 1명이상 보유한 곳으로 규정함

타. 의료기관윤리위원회 운영(안 제16조)

- 1) 연명의료관련 및 담당의사 교체 심의는 외부위원 1명이상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2) 일반 사항심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함
- 3)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운영실적 및 심의결과를 매년 1회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파.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17조)

- 1)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10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3인 이상을 포함하도록 함
- 2)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로 지정받은 기관은 공용위원회 외에 자체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하. 임종과정 판단·환자의사 등 확인 및 기록(안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 환자의사 확인에 대한 기록, 환자의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환자가족의사 확인에 대한 기록을 법정서식으로 마련함

가.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결과의 통보(안 제22조)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후 관리기관에 통보하는 서식 마련하고 임종과정에 대한 판단서, 연명의료계획서 등 환자의사를 확인한 기록을 첨부하도록 함

나. 중앙 및 권역 호스피스센터의 지정 및 지정취소(안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 별표 2 및 별표 3)

- 1) 호스피스의 진료·사업 수행을 위한 센터장·팀장·팀원을 두도록 하고 진료·사업 수행을 위한 병동·사무실·연구실·회의실 등을 마련하도록 함
- 2) 중앙·권역 호스피스센터로 지정 받으려는 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지정신청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정요건을 갖춘 종합병원을 중앙·권역 호스피스센터로 지정하도록 함

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지정(안 제27조·제28조, 별표 4)

- 1) 호스피스전문기관은 입원형·자문형·가정형에 따라 시설·인력·장비 기준을 정함

2)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확인을 실시하고 그 결과 지정기준에 적합한 경우 호스피스전문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도록 함

라. 호스피스전문기관의 의무(안 제29조)

호스피스전문기관은 호스피스의 선택과 이용 절차에 관한 설명에 필요한 자료, 호스피스 이용동의서, 호스피스 이용철회서, 연명의료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을 비치하도록 함

마. 호스피스전문기관의 변경, 폐업·휴업 신고(안 제30조 및 제31조)

1)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소재지, 대표자, 필수인력, 병상 등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변경신고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후 지정서를 재교부하도록 함

2) 호스피스전문기관이 폐업 또는 1개월 이상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폐업·휴업 신고서를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서류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확인 후 그 결과를 문서로 통지하도록 함

바. 호스피스의 신청 및 철회(안 제32조 및 제33조)

1) 호스피스를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용 동의서와 말기진단 의사 소견서를 호스피스전문기관에 제출하도록 하고 호스피스전문기관은 관련 서류를 확인한 후 말기환자등과 그 가족에게 호스피스의 선택 및 절차를 설명하도록 함

2) 호스피스 이용을 철회하려고 하는 자는 호스피스전문기관에게 호스피스 이용철회서를 제출하도록 함

샤.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안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

1)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항목은 호스피스 설명의무 이행여부, 말기환자와 그 가족 및 사별 가족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 제공여부, 전담조직 운영 여부 등이 포함되도록 함

2) 호스피스전문기관의 평가는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전년도 사업실적보고 및 해당 연도 사업계획을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함

3)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전문기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중앙·권역별 호스피스센터, 보건소 등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함

야. 호스피스전문기관 지정 취소(안 제37조)

1)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지정 기준에 미달한 경우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정 기준을 갖추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정 취소하도록 함

2) 호스피스전문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평가를 거부한 경우 1회에 한하여 평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협조하지 않을 경우 6개월 간 호스피스 업무의 정지를 명하도록 함

1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3. 23. • 마감일자 : 2017. 5. 8.

○ 명확한 수급자격 조사 결정 및 복지사각 지대에 있는 지원대상자 발굴의 정확도 제고를 위하여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추가하고, 위기상황에 처한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을 발굴하기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 보장기관의 장이 수급자격 결정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추가(안 제3조제2항 [별표 1] 제8호, 제15호, 제26호)

비상장주식 보유 확인을 위한 증권거래세 과세표준신고서, 복수국적을 소유한 자의 기초연금 부당 수급 방지를 위한 복수국적자 정보, 사망의 심자의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사망의심자 정보 추가

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융정보 등에 대한 조사시 보험정보에서 발생하는 이자 정보 추가(안 제4조제3항제3호)

사회보장급여 신청자에 대한 조사 시 명확한 수급자격 조사를 위해 보험정보(연금보험)의 이자 배당 자료를 확인하기 위함

다. 지원대상자 발굴을 확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 추가(안 제8조제1항 제6호, 제11호)

공공주택의 임대료 체납자 정보 및 전기요금, 이동통신 요금, 가스 요금 등 감면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지 않은 수급자의 가입 정보

라. 보호대상아동을 발굴하기 위하여 위기상황에 처한 아동의 가구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 마련(안 제8조제1항10호)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아동 가구를 예측 선별하여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지원대상아동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것임

19.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 (행정자치부)

- 예고일자 : 2017. 3. 24. • 마감일자 : 2017. 3. 29.
-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으로 출산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일·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함
- 가. 임신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규정 신설(안 제4조제3항 신설)
소속기관의 장은 임신중인 공무원 또는 출산한 지 1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를 명할 수 없음
- 나. 임신 공무원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안 제4조의2 신설)
임신한 여성 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고 모체에 무리가 갈 수 있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장시간 출장 제한
- 다. 배우자 출산휴가 의무 승인(안 제7조의3 제2항)
배우자 출산휴가 신청시 소속 기관의 장은 반드시 승인토록 함
- 라. 육아시간 부여(안 제7조의3 제7항 신설)
생후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에게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 마. 자녀교육휴가 도입(안 제7조의3 제8항 신설)
자녀를 둔 공무원이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 또는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의 범위에서 휴가를 부여하되,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 1일 가산할 수 있음

20.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3. 24.
- 마감일자 : 2017. 5. 4.

- 1999년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 제도가 폐지된 후 17년 만에 일부 어종에 한해 다시 매매장소를 제한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산물 유통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고 대상 수산물은 해양수산부령에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소수 중간상인의 거래 정보 독점으로 인해 가격 교란이 심한 “뱀장어”를 위판장외에서 매매 또는 거래하지 못하는 수산물로 정하고자 함

21.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7. 3. 24.
- 마감일자 : 2017. 5. 4.

-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의 개정을 반영하여 시행령의 관련조문을 삭제하고,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기 위해 시행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함.
- 가. 기술보호 실태조사의 주기 및 조사대상 규정 폐지(제3조제1항 및 제2항 삭제)
 - 나. 실태조사의 법적 근거가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제7조임을 명시하는 자구를 추가 (제3조제3항 수정)
 - 다.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신설 (제3조제4항 ~ 제5항)

22. 전력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3. 24.
- 마감일자 : 2017. 3. 27.

-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의 처리 근거조문 및 서식이 시행령으로 상향됨에 따라 관련규정 및 서식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근거 삭제(안 제35조 삭제,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6호서식 개정)

23.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인)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3. 24. • 마감일자 : 2017. 3. 27.
-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의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가. 기술신탁관리업의 변경허가신청 시 제출하도록 되어있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지등의 인적사항이 적힌 서류(외국인의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증 사본)’ 수집 근거 조항 삭제(제5조제2항제3호 나목)

24.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3. 24. • 마감일자 : 2017. 5. 4.
-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공포 (' 16.12.2, ' 17.6.3 시행, 법률 제14324호)에 따른 것임

25.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3. 24. • 마감일자 : 2017. 4. 13.
-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법률 제14318호, ‘16.12.2 공포, ‘17.6.3 시행)으로 금연구역 관련 의무 미이행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전, 우선 시정 명령을 부과하는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 가. 과태료 부과 기준 체계 정비
공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이 금연구역 지정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금연구역 알림 표지를 설치하지 않는 경우 또는 금연구역 알림 표지 및 흡연실 설치 기준 등을 위반하는 경우 우선 시정 명령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나.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제도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에 신설됨에 따라 변경된 조문을 인용한 규정을 정비하기 위함

다. 전자담배 정의에 고체형(연초고형물) 전자담배를 포함

고체형 전자담배에 대하여 건강증진부담금을 부과토록하는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 상 담배종류의 구분에도 함께 반영하기 위함

26.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3. 24. • 마감일자 : 2017. 5. 4.
-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등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4330호, 2016.12.2.공포, ‘17.6.3.시행)됨에 따라, 의료기기 제조업자 등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7.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3. 24. • 마감일자 : 2017. 5. 4.
- 의약품공급자에게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및 관련 장부 및 근거 자료 등의 보관 의무를 부여하는 등의 「약사법」이 개정(법률 제14328호, 2016.12.2.공포, ‘17.6.3.시행)됨에 따라, 의약품공급자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서식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의약품공급자의 경제적 이익등 제공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양식 마련(안 제44조의2)

의약품공급자가 의료인 등에게 제공한 견본품 등 경제적 이익등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 서식을 정함

28.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3. 24. • 마감일자 : 2017. 3. 27.
- 「개인정보 보호법」이 개정('17. 3. 30. 시행)되어, 대통령령 이상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허용됨에 따라, 현행 「법무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상 ‘주민등록번호’의 수집근거 규정을 폐지함

2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7. 3. 24. • 마감일자 : 2017. 5. 8.
-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 및 사업자 편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계 시공기준 및 감리업무기준의 마련, 감리원의 배치 신고 도입,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등을 새로이 반영하고, 시·도지사의 행정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사업의 상속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절차,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설계 시공기준 및 감리업무기준 마련(안 제6조제3항 신설)
공사의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한 설계 시공 기준과 감리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한 감리업무의 수행기준을 마련하여 발주자, 용역업자 및 공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정함
- 나. 감리원의 배치신고 제도 도입(안 제8조제8항 신설)
공사의 감리를 발주 받은 용역업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서 감리원을 배치한 이후 그 배치현황을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함
- 다. 공사업의 지위승계 신고절차 관련근거 명확화(안 제17조제1항제3호 신설)
공사업의 양도 또는 합병과 마찬가지로 공사업자의 상속에 따라 공사

- 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정함
- 라.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운영(안 제27조제6항 신설)
 공사업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 시공능력평가 결과의 공시, 정보의 제공 요청 시 이에 대한 정보제공 등을 위하여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할 수 있도록 정함
- 마. 공사업자의 하도급 원칙 명확화(안 제29조제2항 신설)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 공사의 하도급 제한 범위에 따라 공사를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업자에게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하도록 정함
- 바. 하도급 제한의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대상 명확화(안 제65조제2호)
 공사의 하도급 제한을 위반하여 하도급 또는 다시 하도급을 한 경우 및 서면승낙에 관한 사항을 거짓으로 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도록 정함
- 사. 고유식별정보 처리의 법적근거 명시(안 제70조의2 신설)
 시 도지사(권한을 위임 위탁받은 자 포함)의 감리원 정보통신기술자 인정 신청, 공사업 등록신청 양도 등에 관한 사무와 공제조합의 현금예치 또는 출자확인서 발급, 금융거래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정함
- 아. 감리원 배치기준 위반에 대한 벌칙(안 제76조제3의2호 신설)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하여 발주하거나 감리원을 배치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함
- 자. 감리원 배치현황의 미신고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 제78조제2의2호 신설)
 시 도지사에게 감리원의 배치현황 신고를 위반하여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함

30.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3. 24.
- 마감일자 : 2017. 5. 4.

-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에 관하여 시·군·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고,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 규정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난의 예방·대비 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6조제1항)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특별자치시·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 나. 급경사지 붕괴 위험표지의 설치 규정 개선(별표 1)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에 설치하는 위험표지의 설치규정을 현장여건에 맞추어 능동적으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하며, 정보 전달 강화를 위해 낙후된 표지판 도안을 변경함.
- 다. 관련 서식의 변경(별지 제1호 서식부터 제5호 서식까지)
 업무의 수행 주체변경에 따른 서식 변경

3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안전처)

- 예고일자 : 2017. 3. 24. • 마감일자 : 2017. 5. 4.
- 국민안전처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의 대응·복구를 제외한 재난의 예방·대비에 관한 업무 전반을 수행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재난의 예방·대비에 관하여 시·군·구 등의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본부장이 하여 오던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 등의 업무로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재난의 예방·대비 업무의 수행 주체 변경(안 제2조제3호,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 제7조제2항, 제8조, 제10조제1항 등)

붕괴위험이 있는 급경사지에 대한 안전조치 명령 등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급경사지 재난의 예방·대비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특별자치시·시·군·구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의 본부장에서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으로 변경함.

32. 군인복제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3. 27. • 마감일자 : 2017. 4. 6.

- 예복의 착용빈도를 고려하여 예복과 정복의 통합으로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예산을 절감하며, 해군의 강인함을 부각시키고, 해군 내부의 정체성과 통일성을 위해 해군의 전투모를 팔각모 형태로 개정하기 위함.
- 가. 예복과 정복의 제식을 통합하고 정복에 예복 견장을 탈부착 하여 필요에 따라 두 가지 복제의 목적에 맞게 착용 가능
 - 1) 정복을 기본형으로 하고 예복 계급장 착용 시 예복으로 활용
 - 2) 예복과 정복 제식 통합에 따라 장교예장과 부사관예장 구분 불필요, 별도 구분 없이 예장으로 통합
- 나. 해군의 전투모를 원형에서 팔각형으로 개정하여 강인함을 부각시키고 해군 내 정체성·통일성을 확보
 - 1) 현재 해군 내 UDT·SSU와 해병대는 팔각모 착용 중
 - 2) 형태 변경, 맵시 미흡 등 착용감·활동성·디자인 등 개선 필요
- 다. 용어에 대한 현대적 표기법에 따른 개정
 - 1) 와이샤쓰 → 와이셔츠
 - 2) 지질 → 재질
 - 3) 하기, 동기 → 하계, 동계
 - 4) 교련 → 군사교육, 교련수업 → 군사학 수업
- 라. 잘못된 띄어쓰기와 표기에 따른 개정
 - 1) 반우의 → 일반우의
 - 2) 각군, 각군참모총장 → 각 군, 각 군 참모총장
 - 3) 제식등의 → 제식 등의
 - 4) 별도4, 별도5, 별도6 → 별도 4, 별도 5, 별도 6

- 마. 기본복제 중 군인복제령에 누락되어 있던 여군 예복·정복 바지 형상을 반영하여 복제착용의 규정을 명확하게 개선
- 바. 별도 1, 별도 2, 별도 3, 별도 4, 별도 5 및 별도 6에서 규정된 복제를 표현하는 그림이 1980년대 수기로 작성되어 불명확함. 따라서 별도 1~6의 그림을 선명하게 개선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3. 27. • 마감일자 : 2017. 5. 8.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0조의5에 의한 학생보호인력 결격사유 확인 시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처리가 가능함을 정하고자 함

34.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3. 28. • 마감일자 : 2017. 5. 8.
- 법 조문 체계를 부실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업무 순서에 따라 정비하고, 고시로 위임되어 있는 부실 예방에 대한 조치사항과 부실조합등의 지정·관리 절차 등의 중요사항을 법령으로 규정하는 한편,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 보험료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등 구조개선 업무의 범위와 절차 등을 법률에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가. 법령 등을 체계적으로 정비
 - 단위수협의 부실예방에서 사후관리까지 업무전반을 반영하고 업무순서에 따라 법조문 체계를 정비함
- 나. 부실예방 업무 관련 용어 정의 도입(안 제2조제3호, 제4호 및 제7호)
 - 기존 단위수협에 대한 부실예방 업무 고시의 주요 규정이 법률에 포함됨에 따라 부실예방업무, 경영관리대상조합 및 경영위험평가 용어 정

의 규정을 법률에 포함

다. 부실예방 업무 제도운영 근거 마련(안 제2장)

- 단위수협의 부실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기존 고시로 정하고 있는 조합의 경영 위험평가, 경영관리대상조합의 지정·관리 및 시정요구 등의 사항을 법률로 이관함

라. 부실조합등의 선정 기준 도입(안 제7조제1항)

- 기존 구조개선업무 감독규정 고시 중 부실조합등의 결정 절차에 관한 일반사항을 법률로 이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실조합등의 대상을 선정하고자 함

마. 경영개선상황 평가 기준 마련(안 제15조제1항 및 제2항)

- 관리기관이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을 체결한 단위수협 등에 대하여 해당 약정의 이행실적을 반기말 또는 연도말 기준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바. 부실조합등에 대한 조치 근거 마련(안 제17조제1항)

- 관리기관은 부실조합등에 대하여 경영개선권고·요구 사항을 이행기간 내 완료하지 않거나, 이행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적기시정 조치의 단계조정 및 내용변경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함

사. 계약이전관련 자료의 보관·관리 및 열람 근거 마련(안 제19조제6항)

- 부실조합등의 행정처분에 따라 계약이전을 결정한 경우 계약이전과 관련된 자료를 보관·관리하게 하고 이해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함

아.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보험료 납부 체계 개편(안 제37조, 제38조)

- 상호금융 예금자 보호를 위해 단위수협이 미리 납부하는 보험료의 경우 해당 수협의 경영·재무 상태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차등보험요율제와 일정 목표의 기금이 적립되면 해당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는 목표기금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함

35.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중소기업청)

- 예고일자 : 2017. 3. 28. • 마감일자 : 2017. 5. 8.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16.12.2

일 공포)됨에 따라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명문장수기업 확인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견기업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중견기업 대상 명문장수기업 확인 및 확인의 취소업무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에 위탁하려는 것임

36.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무부)

- 예고일자 : 2017. 3. 28.
- 마감일자 : 2017. 5. 8.

○ 현행 「의료법」은 환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진료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교도관은 수용자의 처우를 위하여 수용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를 열람하는 등 의료 관련 정보를 이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수용자가 금지물품을 소지하거나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에 금지물품을 반입하는 행위에 대한 형량의 세분화 및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규정을 신설하는 등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발견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가. 수용자 진료기록부 열람 등에 대한 근거 명확화(안 제40조의2)

현행 「의료법」 제19조 및 제21조는 의료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 아닌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누설하거나 진료기록부를 열람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 교도관이 수용자의 처우와 관련하여 치료내용, 건강상태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진료기록부 열람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명확하게 함

나. 수용자 출산의 범위에 사산을 포함(안 제52조)

여성가족부가 “수용자가 사산을 한 경우도 출산의 범위에 포함시켜 모성보호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사산을 한 경우도 출산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함

다. 심리치료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규정 마련(안 제64조)

분류심사 결과 성적충동, 마약·알코올 중독, 상습폭력 등 행위중독, 정신질환을 원인으로 죄를 범하였고 동종의 범죄에 대한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는 수형자에게 심리치료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

형자의 참여 및 프로그램 운영에 적합한 환경 조성 등 그 범죄 원인의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고려하도록 함

라. 수용자 금지물품 종류 추가(안 제92조)

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그 밖에 도주나 다른 사람과의 연락에 이용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수용자 금지물품에 추가하여, 기계장비 및 통신기기 등에 대한 반입금지 근거를 더욱 명확하게 함

마.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기간 규정 명확화(안 제95조 및 제96조)

보호실 및 진정실 수용기간 관련 규정이 불명확하여 전체 수용기간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이 아니라 기간 연장에 대한 한계를 설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으므로, 전체 수용기간의 한계 설정임을 명확하게 함

바. 징벌 대상 행위 추가(안 제107조)

정당한 사유 없이 심리치료프로그램을 거부하거나 태만히 하는 행위를 징벌대상행위로 하여 수형자의 심리치료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함

사. 징벌의 종류 변경(안 제108조)

징벌의 종류 중 “30일 이내의 작업 정지”는 정역의 의무를 부과 받은 수형자에게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30일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 정지”로 변경함

아. 교정자문위원회 설치 기관 변경(안 제129조)

각 교정시설에 설치된 교정자문위원회의 회의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형식적인 회의에 그치고 있어 실질적인 자문기구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하고 지방교정청에 교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의를 활성화하고 지방교정청의 정책에 대한 자문기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자. 벌칙규정 신설 및 정비(안 제132조, 제134조부터 제137조까지)

안 제92조 제2호(무인비행장치, 전자·통신기기 등) 및 제3호(주류, 담배 등)의 금지물품을 수용자가 소지하거나 안 제92조 제2호부터 제4호(음란물 등)까지의 금지물품을 수용자 외의 사람이 교정시설에 반입하는 경우 및 교정시설을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형량을 세분화하는 등 관련규정을 정비함

37.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28. • 마감일자 : 2017. 5. 8.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33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에 따른 동법 제12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안) 제14조2의 신설에 따라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을 시행규칙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댐 준공인가 신청서 등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서 등(안 제5조의2)
사용목적, 사용기간 등을 명시한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 사용승인 신청서 및 댐 완료고시 전 댐 사용승인 증명서 서식 신설
- 나. 기타 댐 준공인가 신청서 및 증명서 일부개정(별지 제2호 및 제3호 서식)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2항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 제14조에 따라 댐 준공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기관 및 준공인가 증명서 발급기관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를 서식에 추가함

38.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28. • 마감일자 : 2017. 5. 8.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337호, 2016. 12. 2. 공포, 2017. 6. 3. 시행)됨에 따라, 댐 건설장기계획 수립 시 지역주민 의견수렴, 사전검토협의회 구성 및 운영, 사전검토협의회의 검토 방법 및 절차,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 댐의 평가 실시, 부담금 납부방법 등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지역주민 의견수렴(안 제3조의2)
가. 지역주민 의견수렴(안 제3조의2)

사전검토협의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검토하여 댐건설의 추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 및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나. 사전검토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3조의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부처·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당해 댐과 이해 관계가 있는 시·군이 2 이상인 경우 40인 이내)하고,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밖에 자세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다. 검토협회의의 검토 방법·절차(안 제3조의4)

협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변화, 댐 건설이 지역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댐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안을 수용하여야 함

라.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안 제14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의 긴급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증명서를 발급

마. 댐의 평가 실시(안 제18조의3)

유입량 변화, 이수·치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10년 주기로 댐의 평가를 실시하며, 댐의 평가 방법, 기준, 평가대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바. 기타 부담금 납부방법, 납부독촉 및 가산금,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등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사전검토협의회가 제출한 권고안을 검토하여 댐건설의 추진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 및 댐건설장기계획에의 반영여부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

나. 사전검토협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안 제3조의3)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과 관계부처·기관·단체 등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당해 댐과 이해 관계가 있는 시·군이 2 이상인 경우 40인 이내)하고, 위원장은 협의회 위원중에서 호선(互選)하며, 그 밖에 자세한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함

다. 검토협의회의 검토 방법·절차(안 제3조의4)

협의회는 댐 건설로 인한 주변 환경변화, 댐 건설이 지역사회·문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고, 댐 사업과 관련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해당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권고안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안을 수용하여야 함

라. 댐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신청(안 제14조의2)

국토교통부장관은 댐건설사업시행자의 사용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사용의 긴급성·적정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댐 건설 완료 고시 전 댐의 사용승인 증명서를 발급

마. 댐의 평가 실시(안 제18조의3)

유입량 변화, 이수·치수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10년 주기로 댐의 평가를 실시하며, 댐의 평가 방법, 기준, 평가대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바. 기타 부담금 납부방법, 납부독촉 및 가산금, 잘못 납부된 부담금 등의 반환에 따른 이자 등을 시행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39. 군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3. 28. • 마감일자 : 2017. 5. 8.

- 복무 중 군인의 국가 및 민간자격, 학점 취득 등을 지원하도록 「군인사법」 제46조의6(군인의 자격 취득 등 지원) 항이 신설('16. 12. 20.)됨에 따라 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임
- 가. 군인사법 제46조의6(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군인이 자격·학점 등을 취득하는데 필요한 지원 정책을 국방부장관이 수립하도록 규정

함에 따라, 지원계획의 명칭과 수립 주체, 계획에 포함할 내용 등을 구체화함.

나. 「자격기본법」에 따른 국가 및 민간자격, 「고등교육법」 제23조에 따른 학점 취득 이외에 대통령령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는 능력검정 등의 사항을 발굴하여 전역 후 취업 및 학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

다. 법 개정 이전 단편적으로 시행되던 군인의 자격·학점 취득 등에 관한 지원활동을 통합하여 분야별로 체계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함.

- 1) 검정 및 시험 정보 안내, 응시기회 제공, 적절한 교육과정 제공, 검정 및 시험을 위한 군 시설 및 장비 지원, 예산 범위내 비용 지원 등
- 2) 관련 부처 및 기관간 협력 및 정책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운영

40.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3. 28. • 마감일자 : 2017. 5. 8.

- 방위사업청 직제개편에 따른 감항인증 업무 소관부서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정부출연기관이 부품 등을 제작·개조·개량하여 장착한 군용항공기의 감항인증 권한을 감항인증 주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41. 「방위산업에 관한 착수금 및 중도금 지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방부)

- 예고일자 : 2017. 3. 28. • 마감일자 : 2017. 4. 17.

- 최근 조선업 부진에 따른 조선업체 신용도 하락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을 기피하여 안정적 사업수행이 어려운 실정임을 고려하여 한시적으로 협력업체 보증분에 한해 조선업체 보증분의 제출의무를 유예하기 위함
- 협력업체 제출 보증분에 한해 조선업체 보증분 제출의무를 2018년 12

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조항을 신설함

42. 행정규제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조정실)

- 예고일자 : 2017. 3. 28. • 마감일자 : 2017. 4. 3.
-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지연 등에 대비해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임자 위촉시까지 임기 만료된 위원의 직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신산업 분야 등에 대한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임기 규정 개정
규제개혁위원회 위원 위촉 지연 등에 대비해 위원회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후임자 위촉시까지 임기 만료된 위원의 직무수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나. 전문위원회 근거 규정 신설
신산업 등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분야 또는 안전에 대한 의견수렴, 검토 분석 등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규제개혁위원회 산하에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43. 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교육부)

- 예고일자 : 2017. 3. 28. • 마감일자 : 2017. 5. 8.
-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로 개인정보 확인을 대체하거나, 주민등록표초본을 통해 신분을 확인하도록 하고, 응시원서 상의 첨부사진을 여권용 규격으로 변경하고자 함
- 가. 행정자치부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요구법령 정비 협조 요청」(‘16.12.2)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원서 제출 시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 제시 또는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해 개인정보를 확인하도록 함(안 제 36조제2항, 제4항, 제6항, 별지 제3호의2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 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등 사진제출 관련 국민불편 해소 방안」 권고(‘15.9.21)에 따라 검정고시 응시원서 상의 첨부사진을 여권

용 규격으로 변경함(안 제36조제1항, 제3항, 제5항, 별지 제3호의2서식, 제4호서식, 제5호서식)

44.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3. 29. • 마감일자 : 2017. 4. 18.
- 국가 안전보장 강화 및 대북 해운통제 강화를 위하여 북한에 기항한 후 ‘180일 이내’에 우리나라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외국 선박에 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도록 하던 것을 ‘1년 이내’로 확대하려는 것임
- 외국 국적의 선박으로서 북한에 기항한 후 무역항에 최초로 입항하는 선박의 국내 입항 시 해양수산부장관의 출입 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간을 기존 180일에서 1년으로 변경(안 제3조제2호)

45. 항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3. 29. • 마감일자 : 2017. 5. 9.
- 「항만법」이 개정(법률 제14452호, 2016. 12. 20. 공포, 2017. 6.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적용특례 규정(안 제14조의2)
항만건설작업선에 대한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에 대한 적용 특례를 규정하여 5년의 정기검사 중에 2년 6개월 전후로 중간검사를 받도록 함.
- 나. 항만건설작업선의 선박검사를 위한 도면의 종류(안 별표2)
항만건설작업선 중 「선박안전법」 제7조의 건조검사를 받지 아니한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 등 업무가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항만건설작업선의 검사업무 시행에 필요한 도면의 종류를 정함

46.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보건복지부)

- 예고일자 : 2017. 3. 29. • 마감일자 : 2017. 5. 18.
- 육아종합지원센터장의 경력기준을 강화하고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를 보다 정밀히 수행하기 위하여 공표 시기를 조정함
- 가.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센터장의 경력기준을 상향조정(제14조제1항)
- 나.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설치의무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의 명단 공표시기를 조정하여 면밀한 조사 수행(제20조의 4제1항)

47.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3. 30. • 마감일자 : 2017. 5. 9.
-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신고와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유, 해외 유전자원에 대한 절차 준수 신고 등을 내용으로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4533호, 2017. 1. 17. 공포)됨에 따라 법률과 대통령령에서 환경부령으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48.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인) (환경부)

- 예고일자 : 2017. 3. 30. • 마감일자 : 2017. 5. 9.
- 생물 유전자원 이용시 제공국의 사전승인과 이익 공유를 요구하는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의정서」의 발효(2014. 10. 12) 및 국제적인 이행체계 구축에 대응하여 국내 이행법률인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이 제정

(법률 제14533호, 2017. 1. 17. 공포)됨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려는 것임

49.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3. 30.
- 마감일자 : 2017. 5. 9.

- 오염물질 배출·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가. 해양환경 관련 신청인의 본인확인 절차 간소화(시행규칙 안 제8조, 제74조)

해양환경 측정기기, 자재·약재의 성능시험·검정의 업무대행자 지정 신청 시 주민등록초본을 통해 신청인의 본인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개인정보를 과다하게 취급하는 사례에 해당하여 주민등록초본 대신 사업자등록번호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도록 규정

- 나. 해양시설 변경신고 사유 및 절차 규정(시행규칙 안 제17조)

해양시설 관리 강화를 위해 변경신고 의무를 신설함에 따라 해양시설 소유자, 주요시설 또는 설비(계류시설, 선박과 저장시설을 연결하는 이송설비, 저장시설, 자가처리시설)의 위치 규모의 변경 등 변경신고 사유와 변경신고 방법 및 기일에 대해 규정

- 다. 행정처분 기준 정비(시행규칙 별표 16, 21, 26)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해양환경관리업자를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고, 해역이용협의서 등의 작성을 대행하는 평가대행자에 대한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함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과 동시에 상위법령에서 등록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된 행정처분 기준 정비

50.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해양수산부)

- 예고일자 : 2017. 3. 30.
- 마감일자 : 2017. 5. 9.

- 오염물질 배출·확산 방지를 위한 규제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해양환경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해양환경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해양환경관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를 간소화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

- 가. 환경개선부담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추가(시행령 안 제33조)

환경개선부담금을 활용하여 추진할 수 있는 사업에 친환경선박의 핵심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이에 관련된 기반조성에 관련된 사업, 국내외 친환경선박 기술개발 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관한 사업 등을 추가

- 나. 해양환경관리업자의 등록서류 제출절차 간소화(시행령 안 제55조, 시행규칙 안 제37조)

법 제70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폐기물해양배출업자, 폐기물해양수거업자, 해양오염방제업자, 유창청소업자 및 퇴적오염물질수거업자 등 해양환경관리업자 등록 및 변경등록 신청시 신청인이 별도로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류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직접 제출하도록 규정

- 다.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시행령 안 별표19)

선박에서의 오염물질 배출규정 준수의무 위반 및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 마련

51.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통상자원부)

- 예고일자 : 2017. 3. 30
- 마감일자 : 2017. 5. 9.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의 개정(법률 제14307호, ‘16.12.2. 공포)에 따라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 및 ‘연접한 단

위개발사업지구들'의 정의 등 법률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임.

- 일정기준 이상으로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는 단위개발사업지구내 건축가능용지 면적의 90%이상을 사용승인 받은 경우로 규정함
- 연접한 단위개발사업지구들은 이 영 제6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개발과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괄하여 사무특례의 적용배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하는 단위개발사업지구들로 규정
- 사무처리 특례의 적용배제 요청 시 제출서류의 범위를 규정하고,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 의결 기간을 3개월로 규정함
-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일정 기준이상 개발이 완료된 단위개발사업지구의 사무처리가 해당 시 군 구로 환원 될 경우, 사무처리의 효율성이 확보되고 주민불편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5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30. • 마감일자 : 2017. 5. 9.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2016.12.20.공포, 법률 제14449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5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30. • 마감일자 : 2017. 5. 9.
- 산업단지의 개별 관리에 따르는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하여 연접한 산업단지를 통합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지원사업 중 일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 평가를 의무화하는 등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이 개정(2016.12.20.공포, 법률 제14449호)됨에 따라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 가.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 절차 마련 (안 제15조의3 신설)

- 산업단지 종류가 같고 연접한 산업단지의 통합을 허용하는 법률 개정
에 따라 산업단지지정권자가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관계행정기관 의견
청취 후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행정기관과 협의·산업입지정책
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 승인하도록 함

나.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타당성 평가 방법 등 마련(안 제27조의3
신설)

-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한 타당성 평가 근거를 법률에 마련함에 따
라 산업단지 진입도로에 대하여 평가방법, 전문기관 등 세부기준 마련

다. 수분양자의 선수금 보호를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분양계획서를 실시
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의무화 (안 제39조제3항 신설)

- 사업시행자가 선수금을 받고자 하는 경우 수분양자 보호를 위해 환
불보증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시계획승
인권자가 사업시행자의 분양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사업시행자가 분양
계획서를 작성하여 산업단지관리기관과 협의하는 경우 분양계획서를
실시계획승인권자에게도 제출하도록 의무화

54.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30. • 마감일자 : 2017. 5. 9.

○ 국민권익위원회의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방안” 권고
(2015.6.22., 의안번호 제2015-187호)를 반영하여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대책 세
부실천계획” (2016.8.23.)의 일환으로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자동
차의 재검사 기간을 단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임

○ 가.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안전관리 강화(안 제77조제1항제3호 및 제80
조제6항 신설)

- 1) 자동차검사 차량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지 않
은 차량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지하도록 하되 전산에 입력한 경우에

는 생략할 수 있도록 함.

2) 자동차검사 단계에서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검사 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최고속도제한장치 무단해체 등 자동차 명령이행기간 설정 및 재검사기간 단축(안 제63조제1항 및 제81조제1항 개정)

1)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무단 해제 등의 사유 발생 시 원상복구 명령 등의 이행기간을 설정하고, 같은 사유로 자동차 정기·종합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경우 재검사기간을 10일로 단축함.

2) 최고속도제한장치 미설치, 무단 해체·해제 및 미작동 자동차가 도로를 운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교통안전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55. 유료도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국토교통부)

• 예고일자 : 2017. 3. 30. • 마감일자 : 2017. 5. 9.

○ 미세먼지 저감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전기자동차 및 연료전지자동차(수소자동차)에 대해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을 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 등록번호)의 구체적인 처리근거를 정하며, 유료도로법 이 개정(법률 제14717호, 2017.3.21. 공포, 2017.3.21. 시행)됨에 따라 통행료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시행령에 정하여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전기자동차) 및 제6호(수소자동차)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하여 고속도로 통행료 50%를 감면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제9호 및 제2항제2호바목 신설).

나.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전기자동차) 및 제6호(수소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유효기간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조).

다. 유료도로법 제15조제2항에 의한 통행료 감면, 제21조에 의한 통행료 등의 강제징수 시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의 처

리가 불가피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구체적인 처리근거를 정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라. 유료도로법 제21조의3제2항제5호에 따라 감면 대상의 확인을 위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56.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여성가족부)

• 예고일자 : 2017. 3. 31. • 마감일자 : 2017. 5. 10.

-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4704호, 2017.3.21. 공포, 2017.6.22.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 정당한 사유 없이 사법경찰관리의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자에 대해 그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함(안 제11조 별표2)

5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안) (산림청)

• 예고일자 : 2017. 3. 31. • 마감일자 : 2017. 4. 17.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 제14362호, 2016. 12. 2. 공포, 2017. 4. 30. 시행)을 통해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을 수목원·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으로 개선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가. 정원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자에게 교부하는 서식 신설(안 제15조의8제3항)
- 나. 교육과정 인증을 교육기관 지정으로 개정(안 제15조의8, 제15조의9)
 - 1) 수목원전문가 교육기관 인증을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으로 하고 인증신청서를 지정신청서로 개정 함

2) 수목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표시를 수목원 또는 정원 전문가 교육기관 지정표시로 개정 함

다. 법 제18조의10제5항 및 제6항의 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 교육과정 인증 유효기간 및 기간 연장 규정이 삭제됨에 따라 연장 요건과 별지 제8호의11서식의 인증기간연장 신청서를 삭제 함(안 제15조의10)

58.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미래창조과학부)

• 예고일자 : 2017. 3. 31. • 마감일자 : 2017. 5. 10.

○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위법행위 등에 대해 실질적인 제재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제회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의결기구 개선 및 경영정보 공시 등 기타 법률의 미비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의결기구인 이사회를 운영위원회 체계로 개선(안 제4조, 제8조, 제11조, 제12조)

집행기구(이사장, 이사)에 대한 견제·감독을 강화토록 의결기구인 운영위원회를 두고, 이사장 1명, 미래부장관이 지명한 사람 3명, 대의원 중 대의원회가 지명한 3명으로 구성하며, 임원의 이사 정원을 10명에서 3인 이내로 축소함

나. 기술사회 회원에 대해 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은 재직자로 명시(안 제6조)

기술사회 회원의 단서조항에 과학기술인공제회 일반회원 자격을 재직자로 명시하여 일반회원(재직자)과 특별회원(퇴직자)의 구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회원자격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함

다. 경영정보 공시 및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 참여 의무화(안 제21조의2)

과학기술인공제회로 하여금 기관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요 경영정보를 공시하고 주된 사무소 등에 비치하도록 하는 한편, 공제회 자산의 효율적·안정적 관리를 위하여 자산운용 관련 심사과정에 외부전문가를 참여 시키도록 함

라.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직무정지 제도 도입(안 제24조의2)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행정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횡령 등의 범죄행위로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공제회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마.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의 해임명령 제도 도입(안 제24조의3)

과학기술인공제회 임원이 직무정지 처분을 받고도 그 직무를 수행하거나 정관에서 정하는 해임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임되지 아니한 경우 해임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59.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문화체육관광부)

- 예고일자 : 2017. 3. 31. • 마감일자 : 2017. 5. 10.
- 「관광진흥법」 제74조의 2항 개정에 따라 「건축법」 제43조에도 불구하고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를 연간 180일 이내의 기간 동안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공연 및 음식을 제공 할 수 있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정하는 것임
- 관광특구 내 공개공지에서 「건축법」에 대한 특례를 적용 받는 ‘관광사업자의 범위’를 정함 (안 제60조의2)

60.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인) (고용노동부)

- 예고일자 : 2017. 3. 31. • 마감일자 : 2017. 4. 20.
- 고용보험 가입자 중에서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재산 및 소득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한편,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상 근로자의 재산과 소득 자료요청 대상 자료 범위를 마련하려는 것임
- 가. 고용보험료 지원 재산 및 소득 기준 근거 마련(안 제28조)
고용보험료 지원 기준이 되는 재산이나 소득은 「지방세법」에 따른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준 미만으로 정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취지에 맞게 제도를 운영하고자 함

나. 고용보험료 지원 재산 및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요청 대상자료 범위 신설(안 제54조의2)

- 「소득세법」에 따른 종합소득 자료(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부가세법」에 따른 매출액 자료 등 근로자의 보수와 고용보험료 지원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추가함
- 또한, 「지방세법」에 따른 재산세 과세자료,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 「부동산등기법」 및 「건축법」 등에 따른 건물, 「선박법」 및 「어선법」에 따른 선박 및 어선, 「자동차관리법」 및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자동차 및 건설기계,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등의 등기·등록 및 공시가격에 관한 자료를 자료요청 대상자료 범위에 포함함으로써 보다 제도 취지에 부합하는 제도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